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1304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및 위탁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그 밖에'주계약자 공동도급제'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

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책임감리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한다.

제14조(의견수렴) ①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③제3조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관할구역에서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8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안 제5조~제6조)

라. 공정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안 제7조)

마.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안 제8조~제9조)

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안 제10조~제12조)

사. 점검 및 평가, 의견수렴(안 제13조~제14조)

아.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안 제15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05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하고, 제3조부터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4조, 제18조 중 “아트홀”을 각각 “아트센터”로 한다.

제3조 중 “흥인동 131번지”를 “퇴계로 387”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허가를 얻어야”를 “허가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허가를 얻어야”를 “사전허가를 받아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2조 본문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제목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호 중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제1호 중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를 “충무스포츠센터”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충무아트센터의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 충무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이라 한다)---------- ----------.
제3조(위치) **아트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홍인동 131번지**로 한다.	제3조(위치) 아트센터 ---------- ------ 중구 퇴계로 387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 ---------- ---------- 아트센터를 ------- ----------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아트홀**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아트센터의 개방 및 이용) ---- ---------- 아트센터를 -------- ---------- ---------- ---------- ---------- ---------- ---------- ----------.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홀**은 구청장 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2. (생 략) ③제1항에 따라 **아트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에 따라 **아트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아트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는--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아트센터의 ---------- ---------- ---------- ---------- ---------- ----------. 1.·2. (현행과 같음) ③ ---------- 아트센터에 ---------- ---------- -아트센터---------관한사항은-------- --------. ④ -------- 아트센터의 ---------- ---------- ---------- ---------- ----------.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지원)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아트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② ---------- 아트센터의 ----------.
제9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아트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_____ 아트센터의 ---------- 허가를 받아야 ---, ----------. ② ---------- -- 사전허가를 받아야 ----, ---------- 제외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 ---------- 아트센터의 ----------.
제12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③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12조(사용허가) ① ---------- ---------- 서식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시간) **아트홀**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3조(사용시간) 아트센터의 ----------.
제1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아트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아트센터의 ----------.
제1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③ (생 략) <신 설>	제1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8조(입장 제한) 1. **아트홀**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아트홀**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8조(입장 제한) 1. 아트센터의 ---------- 2. 그 밖에 구청장이 아트센터 ----------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관한 사항은 ----------.
(별표) **충무아트홀** 사용료 등(제14조 관련)	(별표)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등(제14조 관련)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충무아트홀 개관 10주년을 맞아 뮤지컬 전문 공연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제1조~제6조, 제8조~제10조, 제13조~제14조, 제18조 개정

- 개관 10주년을 맞아 뮤지컬 전문 공연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충무아트홀의 명칭을 “충무아트센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함

나. 제3조(위치) 개정

-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으로 충무아트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다. 제1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개정

-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공연장 할인 규정이 있어 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입장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라. 제6조, 제9조, 제12조, 제22조 개정

- 조례의 규정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각각 정비하고자 함

마. 별표 제목을 “충무아트센터”로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06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 ---------- ----------.
1.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1. -----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15년부터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되었기에 현행수준의 세입징수 포상금 유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년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토록 함.

-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조정 (안 제2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07호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서울특별시 중구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서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대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 임차료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가 있으며 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창고, 폐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의 가출,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안 제4조)

- 적정성심사, 지원연장 결정, 지원중단 또는 비용의 환수 등을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08호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안 제4조)

마. 석면건축물의 기준(안 제5조)

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안 제6조)

사. 조사결과의 공개(안 제7조)

아.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처리, 해체. 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안 제 8조 ~ 제 10조)

자.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안 제11조)

차. 명예석면안전관리 감시원(안 제 12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09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주택법」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공동주택 관리 민간전문가 참여)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각 세대를 대표하는 만19세 이상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와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구청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14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된 감사요청서
7.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7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하 “감사대상단지”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지켜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보고서)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13조(감사결과 통지)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표자에게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대상단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대상단지에서는 주민게시판과 아파트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요청인 대표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table>
<tr><td rowspan="2">대상단지</td><td>단 지 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
(관리사무소)</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요 청 인
대 표</td><td>성 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d>직 업</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동의인수</td><td>동의인수
(동의율)</td><td colspan="2"></td><td>전체세대수</td><td></td></tr>
<tr><td>감사대상</td><td colspan="5">※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td></tr>
<tr><td>감사요청
사항.사유</td><td colspan="5">※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td></tr>
<tr><td>기 타</td><td colspan="5">※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td></tr>
<tr><td colspan="6">「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5">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 사용자의 보호 및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대상 규정 (안 제2조)

나. 공동주택 관리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안 제3조)

다.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 (안 제4조)

라. 안 제4조의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실시(안 제5조 ~ 안 제10조)

- 감사실시 결정, 감사반 편성, 감사계획 수립, 방법, 사전조사 및 실시
-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받을 자에게 통보 (안 제9조)

마. 감사반의 유의사항(안 제11조)

바.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지 (안 제12조 ~ 안 제13조)

사. 감사결과 처리사항 규정(안 제14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10호

서울특별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공간 확대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5. 그 밖의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교통섬,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 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 방법 등 교통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 통행 방법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볼라드의 관

리지침과 설치 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 환경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 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 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중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고,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ㅇ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중심의 교통체계와 보도상의 각종 보행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 위협과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음.

ㅇ 따라서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보행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시 포함할 사항 및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11조)